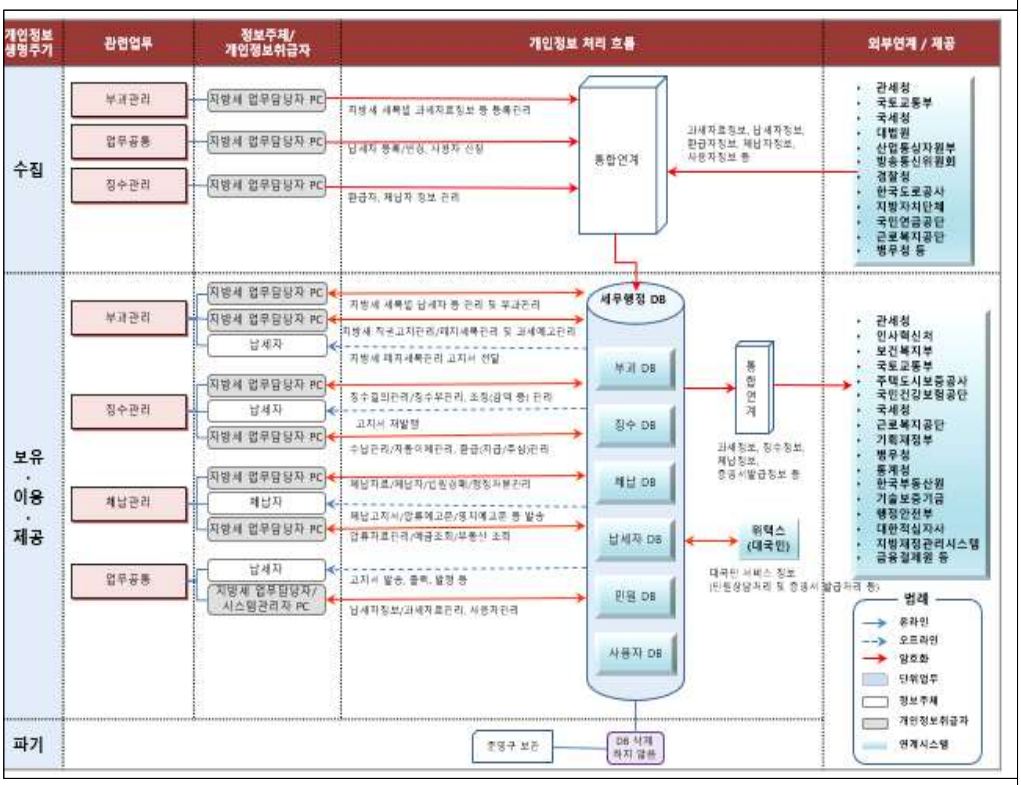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울산광역시 중구</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
기간</td><td>2026.05.27
~
2026.06.30</td><td>평가
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td><td colspan="2">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현재 운영 중</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체납관리 등 세무 업무처리 지원
• 지방세 관계법 개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제공
•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 필요</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5만 명 이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02,650,562천원
(VAT 별도)</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안전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업무의 정보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지방세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지방세 관련 법·제도 개정 등 외부환경 적기 반영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의견수렴 및 기술지원</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td><td colspan="6">해당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3">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 colspan="2">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자동차세관리</td><td>341,946건</td><td colspan="2">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td><td>국민건강보험공단</td><td>자동차세부과를위한정보관리</td></tr>
<tr><td>지방세 과오납금 지급</td><td>171,171건</td><td colspan="2">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td><td>-</td><td>지방세 세입 과오납 환부</td></tr>
</table>

	지방세 전자수납관리	593,061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전자 수납 내역관리
	지방세감액관리	128,287건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감액
	지방세결의관리	488,368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징수결의업무 처리
	지방세고지서관리	368,809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고지서발송을위한 자료관리
	지방세대행신고납부자관리	1,886,394건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지방세 납세자 관리 대행신고 납부자관리
	지방세자동이체관리	3,431건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금융결제원	자동이체신청 및 해지
	지방세직권고지관리	82,613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직권고지 부과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방세분납관리	65,976건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고액납세자 분납처리 관리
	지방세압류대장	73,305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압류내역, 휴대폰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산정보	대법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교통부, 관세청,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자동차영치관리	9,719건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영치장소, 영치일자, 반환일자	-	자동차영치를 위한 납세자 정보관리
	지방세정리보류관리	52,876건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자산정보, 납세정보, 행정처분정보, 신용정보	-	지방세정리보류관련자료관리
	지방세체납자관리	20,260건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지방소득세관리	133,803건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산정보	국세청	지방소득세부과관리

<table>
<tr><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2">1. 개인정보 처리 흐름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과 통합연계시스템을 통해서 과세자료정보, 납세자정보, 환급자정보, 체납자정보, 사용자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 및 이용함.
-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방세 업무담당자는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체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DB에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
-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이 모두 준영구이므로 DB에서 삭제하지 않음

2.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td></tr>
<tr><td>영향평가기준</td><td>평가기준변경 사항 및 사유</td><td>-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25-7호, 2025.9.5.,일부개정) 제10조(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제11조(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법령 개정 및 대상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평가항목을 가감하여 평가 항목으로 구성함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국가표준보급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22.3) 평가항목은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단,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지표” 에서 제시한 “자치단체 점검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함.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의 17개 항목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의 27개 항목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은 평가 대상시스템과 해당 사항이 없어 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7개 평가분야 37개 항목)</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주요
평가기준</td><td>- 2025년 10월 2일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반영
- 2025년 10월 31일에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반영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년 10월 개정) 준용
- 본 평가기관 영향평가 수행방법론 및 대상시스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가감</td></tr>
<tr><td colspan="2">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td><td><u>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u>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파일은『지방세법』 제49조, 제130조,『지방세기본법』 제135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u>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u>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기준 및 보유 목적에 부합된 기간(준영구)으로 산정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대부분 5년, 10년 등으로 별도 산정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음</td></tr>
<tr><td rowspan="2">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td><td>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방안</td><td>-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1.2.1)
- 개인정보파일의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 (2.2.1)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역 공개 현행화 (3.4.1)
- 출입통제절차 수립</td></tr>
<tr><td>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td><td>해당없음</td></tr>
<tr><td colspan="2">평가결과</td><td>•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10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8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5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1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1개 항목을 제외하고 14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27개 평가항목 중 해당없음으로 평가된 4개 항목을 제외하고 22개 항목을 이행하고 있으며, 1개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하고 있음.
• 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5장) 4개 평가분야 30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td></tr>
</table>